

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김경훈 의원입니다.

먼저 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그럼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,

현재 본 조례상 노후 및 불량건축물에 대한 판단 기준의 미비로 인해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.

이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층별 구조가 다른 건축물인 경우

어느 한 구조의 경과 연수가 기준에 충족되면 해당 건축물을 노후 및 불량건축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추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더불어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